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하고,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쌀 수입허가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에서 60년 이상 유지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절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여론의 수렴을 막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만 보면, 첫째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한국이 올 9월 3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일방적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이른바 '관세화'를 하더라도 해마다 40만 8,700 톤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셋째,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제 31조 제 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동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율을 스스로 정할 국제법적 권리마저 포기하고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이에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쌀 관세율 및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1. 한국의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통상법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동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

하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정할 쌀 관세율 계산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나와 있다.(참고자료 1 참조) 한국은 이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 관세율을 결정한 후 3개월 안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하면 된다. (참고자료 2) 쌀 수출국들은 한국이 계산 산식을 잘 적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동필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2. 쌀 관세율을 관세 주권과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법상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3.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65년을 유지한 사회 안전망을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식과 농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민변에 보낸 답변 공문에 의하면 대책을 마련한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농민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국가대사이다. 즉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4. 쌀 관세율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9월 30일까지는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야만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상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쌀 수입자유화 폐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법령 개정 문제이다. 한국은 먼저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 쌀 관세율을 정한 뒤 40일 동안의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 주면 된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40일 전인 올 1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쌀 양허관세율을 입법예고한 후,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20일까지만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허표를 통보하면 된다.

정부의 9월 해외 통보 일정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 심의 권한을 백지화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 5.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담당하는 외교부(외교통일위원회), 보완대책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중대현안으로서 이런 복합적 사안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 구성된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4일 뒤인 6월 30일까지로서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이라는 커다란 통상이슈를 앞둔 지금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면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중요한 통상현안에 대해 국회는 대처할 중요 기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쌀시장 개방이라는 중대현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6. 국회에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요구한다.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일본에게 미국 쌀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쌀 검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선언대로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여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 미국과 TPP를 추진하는 한국에게 미국은 유전자 조작 쌀 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는 한국의 친환경 가족농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 제도이므로 국회는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을 제정하라.

또한 정부가 쌀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관세율을 내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국들은 끊임없이 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 통상 협상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문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 절차에 따라 농민과 국민과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부디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고통과 슬픔 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2014.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